**버튼윌로우 카운티 상수 지구**

**주거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버튼윌로우 카운티 상수 지구(이하 ‘관할구’)에서는 관할구의 모든 수도 이용 고객이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식수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수도 서비스의 손실이 취약층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포함하여 막대한 어려움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에서는 수도 서비스의 중단이 인간의 건강 및 심신의 안녕을 위협하고,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시 특정 인구층에 불균형한 영향이 미치기에, 납부 무능력으로 인하여 수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는 고객 수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인구층에는 영아, 어린이, 노인, 저소득 가정, 유색인종 공동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자, 신체 장애인 및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질병 환자가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수도 공급 중지 보호법이라고도 알려진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규정 116900 이하 참조 항에 의해 수립된 지침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관할구의 청구 절차**

관할구에서는 수도 고객에게 연체료를 청구합니다. 수도 청구서는 고객이 수령한 날짜로부터 10일(‘납부 마감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며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납부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 및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설명된 내용과 같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 및 수도 공급 중지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거주 수도 서비스 중단을 제외하고, 고객이 납부 마감일까지 청구서를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구는 유치권 기록을 포함하여 관할구 정책에 의해 승인된 기타 모든 강제 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 절차**

고객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 7일(영업일 기준) 전, 관할구의 담당자는 수도 서비스 중지일자를 명시하는 전화, 서면 또는 두 방법 모두(‘중지 통지’)를 통해 고객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중지가 임박하였다고 경고하고, 본 정책의 조항을 설명하고 활용이 가능하게 하며, 서비스 중지를 피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a) 전화로 실시되는 경우,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본 정책의 사본 제공을 제안합니다. (2) 해당되는 경우 대체 납부 일정, 납부 연기, 최소 납부, 잔여 미납액 분할 납부 요청 절차를 포함하여 서비스 중지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을 제안합니다. (3) 연체 서비스 요금, 청구액 또는 수수료에 대한 검토 요청 및/또는 항소 절차를 설명합니다.

b) 통지가 서면으로 제공되는 경우, 통지서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고객명 및 주소, (2) 연체 금액, (3) 서비스 중지를 피하기 위해 납부 또는 납부 조정이 요구되는 날짜, (4) 연체 서비스 요금, 청구분 또는 수수료 납부 기간 연장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5) 고객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정책에 따라서 연체된 주거 서비스 요금의 분할 납부를 포함하여 납부 일정 연기, 감액 또는 대체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설명.

**납부 조정**

고객에게 특정 어려움이 있거나 중지일자까지 수도요금 청구서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구와 납부 조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에서는 지연 또는 감액된 납부 계획이나 대체 납부 조정 계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수도 서비스의 중지를 막으려면 고객은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야 합니다.

Buttonwillow County Water District

PO Box 874

Buttonwillow, CA 93206

(661) 764-5273

고객이 60일 이상 동안 (i) 합의된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ii) 납부 계획 기간 동안 현재의 주거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는 관할구에서 고객의 부지 내 두드러지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비스 중지에 대한 최종 통지를 게시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수도국 직원은 전화로 연락하거나 직접 관할구에 방문하는 모든 연체 고객에게 본 정책의 사본을 제공하고 납부 계획에 대해 논의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통지서 전달 불가의 경우**

서면 통지서가 전달 불가를 이유로 반송되면, 관할구에서는 전화로 고객 또는 거주지를 점유하고 있는 성인과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관할구에서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본 정책의 사본 제공을 제안합니다. (2) 대체 납부 일정, 납부 연기, 최소 납부, 잔여 미납액 분할 납부 요청 절차를 포함하여 서비스 중지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을 제안합니다. (3) 연체 요금에 대한 검토 요청 또는 항소 절차를 설명합니다. 관할구에서 전화로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관할구에서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박한 수도 서비스 중지에 대한 통지서와 본 정책의 사본을 눈에 띄게 게재합니다.

**비거주 소유주/비소유 거주자**

청구서 발송 대상 고객이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관할구에서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점유자’에게 보내는 거주지로의 서면 연체 통지서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전화나 직접 접촉을 통해, 또는 해당 거주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중지 통지서를 게재함을 통해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과 합리적으로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고, 거주지 점유자에게 본 정책의 사본을 제공하며, 서비스 청구서를 받고 연체 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일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특별 조항**

관할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객(또는 고객의 세입자)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a) 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거주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며,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1차 의료 제공자(복지기관법 14088항에 기술된 바에 따름)의 인증을 제출하는 고객.

b) 고객의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보충 보안 수입/주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가정의 연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인 경우처럼, 단수 방지법 하에서 제공되는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주거 서비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재정적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고객, 그리고

c) 모든 연체 요금에 관한 관할구의 서면 정책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연기되거나 감액된 납부 계획을 체결할 용의가 있는 고객.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관할구에서는 연기 또는 감액된 납부 계획, 대체 납부 계약 또는 이러한 계약의 병용에 대한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그 조건은 관할구에서 결정합니다. 앞서 기재된 내용을 통해 고객은 연체 요금, 청구분 또는 수수료를 연기 또는 감액받거나, 이에 대한 분할 납부 또는 대체 납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계약이 진행 중인 동안, 고객이 60일 이상 동안 (i) 합의된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ii) 납부 계획 기간 동안 현재의 주거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관할구에서 고객의 부지 내 두드러지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비스 중지에 대한 최종 통지를 게시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후에 거주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재연결**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 가구 소득을 증명하는 거주 고객(또는 고객의 세입자)의 경우, 관할구에서는 다음을 시행합니다.

1. 재연결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더 적은 재연결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업무 시간 중에는 $50, 업무 시간 외에는 $150로 재연결 수수료를 정할 것입니다. 이 최대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변화를 근거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2. 12개월에 한 번씩 연체 청구서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세입자 관계**

본 항의 조항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단지, 이동식 주택 단지, 이동식 주택촌, 캘리포니아 건강 및 안전규정 17008항에 규정된 노동 캠프의 거주지 점유자에 대해 각 거주 공간에 개별 계량되는 수도 공급이 제공될 경우 적용되며, 해당 거주지, 단지 또는 지역의 소유주,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상의 고객입니다.

a. 서비스를 중지하기 최소 10일 전에, 관할구는 거주지 점유자에게 거주 공간의 계좌가 연체 상태이며 서비스가 해지될 예정임을 서면으로 알리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b 서면 통지서에서는 거주자에게, 거주자가 기록상의 고객이 되어 공간의 수도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수락할 수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점유자는 기존 기록상의 고객이 빚진 연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관할구에서는 한 명 이상의 거주자가 관할구의 납부 이행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거나, 관할구가 약관을 충족하지 않는 점유자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거주지 점유자에게 관할구의 서비스 약관, 규정 및 관세에 동의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d. 앞서 기재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거 단위가 단독주택 주거 공간인 경우, 관할구에서는 (1) 제안된 중지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중지를 통지하고, (2) 점유자에게 연체 계좌 고객이 해당 거주 공간의 집주인, 관리자 또는 대리인인지 인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인증에는 대여 또는 임대 계약서,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기타 정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청구서에 대한 논의 또는 항소**

해지 통지를 받은 모든 고객은 수도 서비스 중지일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전까지 관할구에 서면으로 항소 통지서를 전달하여 청구서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청구서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할구 사무관은 항소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인에게 결정 내용을 송부해야 합니다. 관할구 사무관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중지 후**

관할구에서 미납 요금으로 인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본 정책의 사본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서비스 복구**

관할구에서는 서비스가 중지된 후, 해당되는 재연결 서비스 수수료 납부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복원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즉시 제공합니다.

**본 정책의 이용 가능성 여부**

본 정책은 고객 요청 시 제공됩니다.